

# 2022년 9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개 요

- ◆ 일시·장소 : 2022. 9. 16.(금) 10:00~13:3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 참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6) : 이승한, 최승철, 김수정, 이임혜경, 손영주, 김원규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2) : 노승현, 이해리
  - 소관부서(2)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8건

-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 의결사항 : 7건(권고 3건, 기각 1건, 이유없음 2건, 조사중해결 1건)

### 심의결과

| 구분   | 합계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재상정 |
|------|----|-------------------------|--------------------|-----|
|      | 8건 | 4건                      | 4건                 | 0건  |
| 보고사항 | 1건 | 1건<br>(각하 1)            | -                  | -   |
| 의결사항 | 7건 | 3건<br>(이유없음 2, 조사중해결 1) | 4건<br>(권고 3, 기각 1) | -   |

### 결과내역

| 의안번호                                       | 사건번호    | 의안명                               | 조사의견 | 상정결과 |
|--|---------|-----------------------------------|------|------|
|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         |                                   |      |      |
| 22-82<br>(재상정)                             | 22신청-49 | 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br>성희롱 및 성추행     | 각하   | 원안가결 |
| 의결사항 : 7건(권고 3건, 기각 1건, 이유없음 2건, 조사중해결 1건) |         |                                   |      |      |
| 22-83<br>(재상정)                             | 22신청-47 |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및 개인정보<br>자기결정권 침해 | 권고   | 수정가결 |

| 의안번호          | 사건번호    | 의안명   | 조사의견    | 상정결과 |
|---------------|---------|---|---------|------|
| 22-84         | 22신청-55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 권고      | 수정가결 |
| 22-85         | 22신청-60 | 투자출연기관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 권고      | 수정가결 |
| 22-86         | 22신청-43 | 직장 내 괴롭힘  | 기각      | 수정가결 |
| 22-87<br>(이의) | 22이의-16 |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등(22신청-16) 권고 결정 이의 | 이유없음    | 원안가결 |
| 22-88<br>(이의) | 22신청-18 |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22신청-34) 기각 결정 이의            | 이유없음    | 원안가결 |
| 22-89         | 22신청-38 |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조사 중 해결 | 원안가결 |

## 보고사항

- [의안 제22-82호] 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 22신청-49 (각하) 원안가결
  -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 의견을 원안가결 하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나고 범죄는 아니지만 새로운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은 안되었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다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새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에게 안내하기로 함.

## 의결사항

- [의안 제22-83호]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22신청-47 (권고) 수정가결
  -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용으로 목적외 사용한 사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함.
  -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것이 성희롱(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기관에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연애를 거는 정도로 인지할 수준이 아니므로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함.

-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은 피신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달라 본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밝힐 수 없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의 피해자 연락처 입수 경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임
-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고발조치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 명확히 범죄사실이 인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는 형사 고발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및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임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기로 함.

#### ○ [의안 제22-84호]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 22신청-55 (권고) 수정가결
- 성희롱 인정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이 아닌 피해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평균적 일반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만 누가 봐도 명확한 진술이나 사안이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나 당사자의 판단이 평균적 일반인의 판단 기준보다 중요하게 인정될 필요성이 있기에 성희롱 피해로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피해자 2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 2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행위들은 습관적으로 친밀감이라고 표현한 행위가 타인한테는 불쾌감을 주거나 그런 행동으로 비취질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함.
- 피신청인 한 명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피신청인

의 인사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2차 피해예방 조치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업무공간에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함.

- 익명 신고는 신빙성과 진정성라는 초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익명 신고에 조사권을 발동하는 게 행정 낭비의 측면도 있으므로 조례상에 각하 규정은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익명 신고는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의안 제22-85호] 투자출연기관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 22신청-60 (권고) 수정가결

- 네오테니는 다의적 표현이고 검색 사이트에서 유형성숙의 의미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해서 성희롱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논거가 불충분하고 네오테니를 검색해보면 유형성숙의 의미가 먼저 나오는 사이트가 있고 나중에 나오는 사이트가 있으며 그 의미도 성적 함의가 없는 생물학적 학술적 개념으로 보임. 피신청인도 성희롱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네오테니의 생물학적 개념 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인문 사회학적 의미도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다만 피신청인이 여성 직원을 꽃으로 표현하고 유형성숙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네오테니 단어를 신청인에게 쓴 행위는 신청인이 성희롱과 같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시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권고하기로 하고 추후 이 사건은 시민인권배심회의 안건으로 올려볼 필요가 있음.

○ [의안 제22-86호] 직장 내 괴롭힘

- 22신청-43 (권고) 수정가결

- 피신청인 1이 신입 부서장으로 부임해 새로운 지침을 내려서 조직 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관리자의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는 이랬다는 사유나 신청인에 대한 질책이 좀 과하다 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는 이르지 아니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 1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함.

-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2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을 권고하기로 함.
- 신청인의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5월경부터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다른 팀으로 인사이동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2차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의안 제22-87호]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습 등 권고 결정 이의

- 22이의-16 (이유없음) 원안가결
- 원결정 자료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결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원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유없음으로 원안가결함.

○ [의안 제22-88호]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결정 이의

- 22이의-18 (이유없음) 원안가결
- 원결정 자료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한 결과 원 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으로 원안가결함.

○ [의안 제22-89호]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2신청-38 (조사 중 해결)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언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사 중 해결에 동의하였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의 동의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사 중 해결로 결정함.

□ 기타안건

- 전결권 조정이 구제위원회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으로 정리하고 구제위원회 위원에게 회람 후 결과보고에 첨부하기로 함.